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업 영업소

구분	상호명	영업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지에스25 신촌문화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43 (창천동)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23.

나. 신청기간 : 2024. 5. 24. ~ 2024. 5. 31.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신고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라. 접수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지역경제과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간 최종일 18:00시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함)

바. 지정방법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접수 순서와 관계 없음)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 추첨 일시는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기 타 :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33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